

의안번호	2216638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3.
추계번호	26E07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횟수 제한 폐지 및 판매품목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(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)	○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횟수 제한 폐지 및 판매품목 확대 - 구입횟수: 연 6회 → 제한 없음 - 판매품목: 주류, 담배, 시계 등 시행령 한정하여 규정 → 「관세법」에 따라 특정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13 제1항 및 제6항 (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을 일반 보세판매장(면세점)과 동일하게 확대하고,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횟수 제한(현행 연 6회)을 없애려는 것으로, 면세물품 판매 확대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현행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에서는 주류, 담배 등 17개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
 - 일반 보세판매점(면세점)의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출입 금지 물품 등 특정품목

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 6회 이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을 원하는 이용자 및 이들의 구입금액 추정치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 및 합리적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객관적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현재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연 6회만 구입할 수 있으며, 최근 4년간(2022~2025년)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최근 4년간(2022~2025년)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실적

구분	이용자 총 구입금액(억원)	구입횟수(건)	구입 1회당 평균금액(원)	횟수별 이용객수(명)	
2022	6,585	5,275,790	124,810	1회	3,597,226
				2회	497,650
				3회	129,623
				4회	53,338
				5회	28,385
				6회	35,749
				계	4,341,971
2023	5,384	4,374,370	123,071	1회	2,854,635
				2회	371,386
				3회	100,630
				4회	43,028
				5회	23,662
				6회	30,775
				계	3,424,116
2024	4,636	3,790,615	122,293	1회	2,538,643
				2회	332,130
				3회	89,696
				4회	38,642
				5회	20,896
				6회	27,920
				계	3,047,927
2025	3,935	3,275,282	120,133	1회	2,116,203
				2회	276,116
				3회	76,861
				4회	33,146
				5회	18,225
				6회	25,424
				계	2,545,975

자료: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